

##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			
회의소집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11:00		
회의일시	2021년 12월 2일(목) 12:00		
재적의원	11명	참석의원	8명
회의장소	뉴밀레니엄관 13층 회의실		
회의안건	1. 학칙 개정(안) 심의 2. 교육과정 개편(안) 자문		
회의내용			

**1. 회의진행**

- 가. 정찬 의장이 급작스런 소집으로 규정상 일주일 전 소집 통보를 할 수 없었음을 양해 요청하며, 유선 통화로 소집 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다.
- 나. 정찬 의장이 재적의원 11명 중 하병욱 의원, 박이봉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전 불참을 통보하였고, 개인사정에 의한 당일 불참(강옥선)에 따른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 다. 정찬 의장이 본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회의록 회람 및 회의록 수정사항에 묻다.
- 라. 정찬 의장이 전회 회의록에 대한 수정사항 없음을 확인하고, 전회 회의록을 확정하다.
- 마. 정찬 의장은 금일 회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 안건 심의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다.

**2. 본안건 심의 및 자문**

**(1) 학칙 개정(안) 심의**

- 가. 정찬 의장이 먼저 서진택 기획부처장에게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나. 서진택 기획부처장이 별첨의 학칙 개정(안)과 같이 국내대학 간 공유대학의 근거 마련, 소속변경 제도 도입, 전과 관련 학칙시행세칙과의 규정 체계 개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근거 마련, 학사학위수여표 개정, 학사경고 제적 중복 삭제,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및 학칙개정절차 현행화에 대하여 설명하다.
- 다. 정찬 의장이 각 위원들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라. 양황규 의원이 제46조에서 학사경고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다.
- 마. 서진택 기획부처장이 기존 제46조 후문의 경우 제27조 제3호와 중복되기에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바. 백운용 의원이 전과신청에 학점제한이 있는지 질의하다.
- 사. 서진택 기획부처장이 전과신청에 학점제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다.
- 아. 양황규 의원이 [별표2] 학사학위수여표는 2022년 1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웹툰학과는 경우 삭제하고 추후 반영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자. 서진택 기획부처장이 웹툰학과는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양황규 의원의 의견이 타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다.
- 차. 김홍규 의원이 소속변경 등을 비롯한 이번 학칙 개정(안)에 찬성하다.
- 카. 양황규 의원이 김홍규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 타. 정찬 의장이 다른 의견의 개진을 요청하고,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학칙 개정(안)에 대해 승인을 선언하다. 단, 학칙 [별표2] 학사학위수여표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 신설학과 중 웹툰학과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추후 일률적으로 2022학년도 신설학과 등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다.

간서명 대표	의장	정찬	의원	하병욱	의원	김도원
-----------	----	----	----	-----	----	-----

(2) 교육과정 개편(안) 자문

- 가. 정찬 의장이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김종무 학사운영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나. 김종무 학사운영팀장이 배부해드린 교육과정 운영 혁신(안)과 같이 교과과정 운영 혁신, 교양교육 개선, 셀프 브랜드 개발 교육, 원격교육 혁신, 비교과 교육 혁신, 졸업요건 개선, 교수제도 운영 혁신 등 7개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 다. 정찬 의장이 각 위원들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라. 양황규 의원이 전공단일 교과과정, 소속변경, 교양필수 블렌디드 수업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 중심으로 시행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다.
- 마. 정찬 의장이 셀프브랜드 개발, 원격교육, 비교과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수월성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다.
- 바. 손성욱 의원이 교육과정 운영의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다.
- 사. 백운용 의원이 손성욱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 아. 정찬 의장이 다른 의견의 개진을 요청하고,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교육과정 개편(안)을 원안대로 자문하기로 하다.

3. 회의결과 및 폐회

(1) 회의결과

- 가. 정찬 의장이 회의결과를 확인하다.
- 나. 학칙 개정(안), 교육과정 개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2) 간서명 대표

- 가. 정찬 의장이 회의록 작성을 위해 간서명 대표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다.
- 나. 백운용 의원이 간서명 대표로 정찬 의장, 손성욱 의원, 김도원 의원을 추천하고, 양황규 의원이 이에 동의하다.
- 다. 정찬 의장이 간서명 대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정찬, 손성욱, 김도원 의원으로 간서명 대표를 확정하다.

(3) 폐회

이상과 같이 심의 및 자문을 마치고 폐회를 하니 12시 50분이 되다.

간서명 대표	의장	정찬	의원	손성욱	의원	김도원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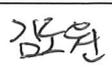
# 1. 학칙 개정(안)

## (1) 규정 개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대학 간 공유대학 근거 마련</li> <li>• 소속변경 제도 도입</li> <li>• 전과 관련 학칙시행세칙과의 규정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된 전과의 개념, 전과의 허가 학칙으로 규정</li> <li>- 전과의 일반적 자격요건 정비, 재학연한 삭제에 따른 규정 정비</li> </ul> </li> <li>•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근거 마련</li> <li>• 학사학위수여표 개정</li> <li>• 학사경고 제적 중복 삭제: 기존 제46조 후문의 경우 제27조 제3호와 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칙시행세칙 제53조 및 제54조 이중 규정 ⇒ 해당 조문 삭제</li> <li>- 학사경고 면제 프로그램 근거 마련</li> </ul> </li> <li>•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및 학칙개정절차 현행화</li> </ul>
---

## (2)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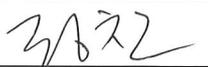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비고
<p>제3조(학부, 정원, 별도법인, 민석도서관, 부설연구소센터)                      ① ~④ (생략)                      ⑤ 부설 연구센터로 방사선보건환경연구소,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유비쿼터스 어플라이언스 지역혁신센터, 3D 융합연구소, 일본연구소, 임권택영화연구소, 엠비엔트 인텔리전스 연구소, 퍼블릭디자인&amp;라이팅연구소, 첨단아케이드게임지역혁신센터, 중국연구소,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u>인터랙티브 MR 융합 연구센터</u>, 인공지능 모바일 포렌식 연구소를 둔다.</p>	<p>제3조(학부, 정원, 별도법인, 민석도서관, 부설연구소센터)                      ① ~④ (현행)                      ⑤ 부설 연구센터로 방사선보건환경연구소,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유비쿼터스 어플라이언스 지역혁신센터, <u>문화콘텐츠 가상융합기술 연구소 (XCCT Labs)</u>, 일본연구소, 임권택영화연구소, 엠비엔트 인텔리전스 연구소, 퍼블릭디자인&amp;라이팅연구소, 첨단아케이드게임지역혁신센터, 중국연구소, <u>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AI+X융합연구소</u>, 인공지능 모바일 포렌식 연구소를 둔다.</p>	<p>자구수정</p> <p>자구수정</p>
<p>제6장 전과(학부이동 및 전공변경)                      제20조(자격)</p>	<p>제6장 전과 및 소속변경                      제20조(전과) ①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 중인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과(학부이동 및 전공변경)할 수 있다.</p>	<p>조문 신설</p> <p>장명개정</p> <p>전문개정/제목개정</p> <p>학칙시행세칙</p> <p>제2조제3조제5항 통합</p>
<p>① 전과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제 2 학년 1학기 초, 제 3 학년 1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단, 3학년 편입생은 제 3학년 2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p> <p>②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까지 허용되 전</p>	<p>② 전과는 2회에 한하며, 매학기 초에 할 수 있다.</p> <p>③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까지 허용한다.</p>	

간서명 대표	의장		의원		의원	
--------	----	---	----	---	----	---

현행	개정	비고
<p>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단, 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로의 전과(전입)는 허용하지 않는다.</p> <p>③ 미래커리어대학은 교육과정 및 운영의 특성상 미래커리어대학 내에서의 전과만 허용되며, 미래커리어대학을 제외한 타 학부(과) 및 전공으로의 전과(전입 및 전출)는 허용하지 않는다.</p> <p>④ 동아시아학과는 교육과정 및 운영의 특성상 전과(전입)는 허용하지 않는다. 단,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한국어·비즈니스 연계전공을 신청 할 경우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p> <p>⑤ 전과를 지원하는 자가 허가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행할 수 있다.</p> <p>⑥ 특기자로 입학한 자는 전과 할 수 없다.</p>	<p>④ 다음 각 호의 전과는 허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칙에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로의 전과(전입)</li> <li>2. 특기자로 입학한 자의 전과(전출)</li> <li>3. 학문 특성에 따른 세칙에서 정한 학과의 전과</li> </ol> <p>⑤ 폐지된 전공의 복학생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의2(소속변경) 입학 후 학사 구조개편 등에 의해 모집단위 또는 전공의 명칭변경·통합·분리 등 편제 변경이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기존 소속에서 변경된 편제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p>	<p>기존 제2항 단서</p> <p>기존 제6항</p> <p>기존 제3항제4항 세칙 위임</p> <p>기존 세칙</p> <p>제3조제6항 조문 신설</p>
<p>제21조(절차)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한다.</p>	<p>제21조(절차) ① 전과 및 소속변경 신청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한다. 단, 소속변경의 경우 성적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p>	<p>자구수정</p> <p>단서 신설</p>
<p>제22조(이수과목) ① 전과한 자는 당해 전입전공 및 학부의 소정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득학점 및 성적은 전입 학부장이 인정할 수 있다.</p> <p>② 전과한 자의 재학년한에는 종전의 재학한 년한을 통산한다.</p>	<p>제22조(교과이수) ① 전과 및 소속변경을 한 학생은 변경된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득학점 및 성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p> <p>② 전과한 자의 재학년한에는 종전의 재학한 년한을 통산한다.</p>	<p>항 신설</p> <p>기존 제20조제5항</p> <p>제목개정</p> <p>자구수정</p>
<p>제3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34조(졸업·학위·학위취소) ① - ② (생략)</p>	<p>제33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교는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목표에 연계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② - ③ (현행)</p> <p>제34조(졸업·학위·학위취소) ① - ② (현행)</p>	<p>제2항 삭제</p> <p>자구수정</p>
<p>③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1)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p>	<p>③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1)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p>	<p>별표 개정</p>

간서명 대표	의장	김창근	의원	홍성욱	의원	김호원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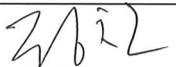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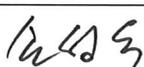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비고
<p>하고 수료증서(별지서식 2)를 수여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34조의2(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본 대학교 부설 <u>사회교육원</u>에서 취득한 학점이 84 학점 이상인 자</p>	<p>하고 수료증서(별지서식 2)를 수여 할 수 있다.</p> <p>④ (현행)</p> <p>제34조의2(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p> <p>3. 본 대학교 부설 <u>평생교육원</u>에서 취득한 학점이 84 학점 이상인 자</p>	<p>자구수정</p>
<p>② - ③ (생략)</p> <p>④ 제3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 ③항에 의한 학위종별 및 전공에 따른다.</p>	<p>② - ③ (현행)</p> <p>④ 제3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 제3항에 의한 학위종별 및 전공에 따른다.</p>	<p>자구수정</p>
<p>제34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 ① (생략)</p> <p>②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은 유예 학기별 6 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87조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p>	<p>제34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 ① (현행)</p> <p>②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은 유예 학기별 6 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p>	<p>자구수정</p>
<p>제37조의2(교양학사학위트랙) ① (생략)</p> <p>② 교양학사학위트랙은 (별표 6)과 같다. 단, <u>제1전공</u>으로 이수할 수 없다.</p>	<p>제37조의2(교양학사학위트랙) ① (현행)</p> <p>② 교양학사학위트랙은 (별표 6)과 같다. 단, <u>주전공</u>으로 이수할 수 없다.</p>	<p>자구수정</p>
<p>③ - ⑤ (생략)</p> <p>제38조(연계교육) 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u>연계교육프로그램</u>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 ⑤ (현행)</p> <p>제38조(연계교육) 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u>셀프브랜드개발 연계교육프로그램</u>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자구추가</p>
<p>② - ③ (생략)</p> <p>제39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실시한다.</p>	<p>② - ③ (현행)</p> <p>제39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자구수정</p>
<p>제46조(학사경고) 매학기 <u>성적</u>의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 학사 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이에 <u>관한</u>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제46조(학사경고) 졸업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매학기 <u>성적</u>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단,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대해 1회 <u>에 한하여</u> 학사경고를 면제할 수 있다.</p>	<p>자구추가 자구수정 단서 신설</p>
<p>제68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u>학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u></p> <p>2. - 6. (생략)</p>	<p>제68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u>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u></p> <p>2. - 6. (현행)</p>	<p>자구수정</p>
<p>제73조의3(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방법) ①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u>해당된</u> 자로서 학생자치단체 선거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p>	<p>제73조의3(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방법) ①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u>따라</u> 등록된 자로서 학생자치단체 선거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p>	<p>자구수정</p>

간서명 대표	의장		의원		의원	
--------	----	---	----	--	----	---

현행	개정	비고
<p>선출한다.</p> <p>1.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7이상인 자</p> <p>2. 4학기이상 정규학기 미만 등록한 학생</p> <p>3. 징계에 회부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p> <p>4. 선거권자의 10%이상 추천을 받은 학생(단, 총학생회장 정부 선거시)</p> <p>5.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위 각 호를 확인 후 등록</p>	<p>라 선출한다.</p> <p>1. - 4. (현행)</p> <p>5.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위 각 호를 확인 후 등록</p>	호 삭제
<p>② - ④ (생략)</p> <p>⑤ 전④항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한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회장의 잔여임기가 2/3이상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하고 잔여임기가 2/3미만일 때에는 차순위자가 업무를 대행한다.</p>	<p>② - ④ (현행)</p> <p>⑤ 제4항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한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회장의 잔여임기가 2/3이상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하고 잔여임기가 2/3미만일 때에는 차순위자가 업무를 대행한다.</p>	자구수정
<p>제75조(학생활동 및 단체조직의 승인) ① (생략)</p> <p>②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는 그 목적 외의 활동을 <u>금지</u>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p>	<p>제75조(학생활동 및 단체조직의 승인) ① (현행)</p> <p>②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는 그 목적 외의 활동을 <u>금지</u>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p>	자구수정
<p>제86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 교지(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주례동) 내에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86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 교지(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주례동) 내에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p>	자구삭제
<p>② (생략)</p> <p>제90조(학칙개정) ①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장은 학칙개정의 필요성, 내용, 효과 및 시행예정일에 관한사항을 <u>기획연구처</u>에 제출한다.</p>	<p>② (현행)</p> <p>제90조(학칙개정) ①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장은 학칙개정의 필요성, 내용, 효과 및 시행예정일에 관한사항을 <u>교무처</u>에 제출한다.</p>	자구수정
<p>②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검토 후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심의를 의뢰한다.</p>	<p>② <u>교무처</u>는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검토 후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u>기획연구처</u>로 심의를 의뢰한다.</p>	자구추가
<p>③ 심의한 학칙개정안을 <u>대학평의원회</u>와 <u>교무위원회</u>의 심의를 받는다.</p>	<p>③ 심의한 학칙개정안을 <u>대학평의원회</u>와 <u>교무위원회</u>의 심의를 받는다.</p>	자구추가
<p>④ (생략)</p>	<p>④ (현행)</p>	

**(3)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규정 제20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International Studies과 학위명 변경 적용례) International Studies과 학위명 변경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3.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위명 변경 적용례)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위명 변경은 2022년 3월 1일 이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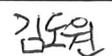
간서명 대표	의장		의원		의원	
-----------	----	---	----	---	----	---

**[현행] 별표 2. 학사학위수여표**

학위종별	학과 및 전공	비고
경영학사	(생략)	
문학사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방송영상전공, 광고PR전공, 영상문학전공, 청소년상담심리전공, 영상문예창작전공, 미디어창작전공, 방송영상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통상학사, ...물류학사	(생략)	
국제학사	국제관계학전공, 국제지역비즈니스학전공 International Studies과	
사회복지학사, ...작업치료학사	(생략)	
공학사	전자공학과,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정보보안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게임학과, 융합전자공학과, ...미래ICT융합공학부	
공학사(토목공학심화), ...체육학사	(생략)	
예술학사	영화과, ...연기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영화&비주얼이펙트융합연계전공	
교양학사, ...문학사/이학사/공학사/예술학사 중 택1	(생략)	

**[개정] 별표 2. 학사학위수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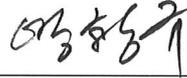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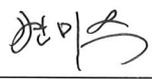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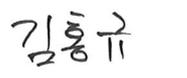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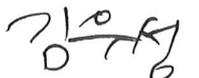
학위종별	학과 및 전공	비고
경영학사	(현행)	
문학사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방송영상전공, 광고PR전공, 영상문학전공, 청소년상담심리전공, 영상문예창작전공, 미디어창작전공, 방송영상학과, 광고홍보학과, <u>International Studies과</u>	
국제통상학사, ...물류학사	(현행)	
국제학사	국제관계학전공, 국제지역비즈니스학전공 International Studies과	
사회복지학사, ...작업치료학사	(현행)	
공학사	전자공학과,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정보보안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게임학과, 융합전자공학과, ...미래ICT융합공학부 <u>바이오제약공학과</u>	
디지털콘텐츠학사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학과, <u>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u>	
공학사(토목공학심화), ...체육학사	(현행)	
예술학사	영화과, ...연기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영화&비주얼이펙트융합연계전공	
교양학, ...문학사/이학사/공학사/예술학사 중 택1	(현행)	

간서명 대표	의장		의원		의원	
--------	----	---	----	---	----	---

#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			
회의소집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11:00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12:00		
재적의원	11명	참석의원	8명
장소	뉴밀레니엄관 13층 회의실		
안건	1. 학칙 개정(안) 심의 2. 교육과정 개편(안) 자문		

2021. 12. 2.

구분	성명	서명(인)	구분	성명	서명(인)
의 장	정 찬		의 원	하병욱	불참
부의장	양황규		의 원	강옥선	불참
의 원	백운용		의 원	변미옥	
의 원	김홍규		의 원	김우성	
의 원	손성욱		의 원	박이봉	불참
의 원	김도원				